

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의안번호 2155호)

검 토 의 견 서

2021. 3. 2.

서울혁신기획관

서울혁신기획관 직무대리 민수홍입니다.

채유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155호

「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.

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

서울시 공공갈등 관리와 관련 된 사항을 심의하는

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회의 소집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

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개정발의 된 안으로,

이번 조례 개정으로

위원회 소집시기와 절차를 구체화하여 회의 운영에 있어 효율성을

기할 수 있으며,

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대한 사유를 구분하여 명시함에

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.

따라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회의 소집과 위원에 대한

제척·기피·회피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원안대로

의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.

이상으로, 「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
2021. 3. 2.

서울혁신기획관 직무대리 민 수 홍